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청년 등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
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
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
대통령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성숙 (국방부 등 4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,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0. ~ 9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)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상담경험”을 “상담경험(학사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상담경험”을 “상담경험(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“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”을 “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(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각 목의 해당 학위·자격 또는 학교(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취득·졸업하

기 전과 취득·졸업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.

제4조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4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에는 각 목의 해당 학위를 보유(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기 전의 경력과 각 목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이 포함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)	제32조(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)
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 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 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 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”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 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<u>상담 경험</u> 이 있는 사람	2. ----- ----- ----- <u>상담 경험(학사학위 취득 전의 상 담경험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
3.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 상의 <u>상담경험</u> 이 있는 사람	3. ----- ----- ----- -- <u>상담경험(석사 이상의 학</u>

② (생략)	<u>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한다)---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-

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) ① (생략)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 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: 다 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. ~ 라. (생략) 마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 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 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 는 농림수산물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 한 사람으로서 <u>관련 업무</u> <u>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</u> 바. ~ 아. (생략)	제6조(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련 업무</u> <u>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</u> <u>(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</u> <u>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</u> 바. ~ 아. (현행과 같음)
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5166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63
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799
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12